#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87

발의연월일: 2022. 4. 5.

발 의 자:서삼석·김선교·김승원

김정호·강민정·박 정

윤재갑 • 안규백 • 신정훈

최기상 · 오영환 · 김진표

백혜련 • 허 영 • 노웅래

윤영덕 • 신현영 • 임종성

장경태 · 위성곤 · 김원이

최인호 · 황운하 · 임호선

이워택 • 전용기 • 민형배

김철민 · 소병철 · 김승남

유정주 의원(31인)

## 제안이유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4개도 및 106개 시군구에 이르고 이 중 농어촌 시군이 98개로 전체 시군구의 92.5%를 차지하고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에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였는데 농어촌 지역이 특히 많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에 이를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는 또다시 생산연령인구의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활력과 농어촌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바,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이 협력을 통한 사업이 몇몇 자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음.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모델로 전남 영암군과 영암농협이 협력·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가치를 확산시킨 유채·메밀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경남 함양군이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함양농협이 상품화 및 홍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함양파(일명 "칼솟") 재배사업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 2건 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재정·행정적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 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5조).
-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 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수행할 민간기관은 공모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어야 함(안 제8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해지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에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대한 성과평가 측정 및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매년 지역농 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유형·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5. "민간 운영기관"이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다.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2 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 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마.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
- 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
-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 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측정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

기관 간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 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1.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의 경제 · 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 3. 지역 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 4.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
-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공모·선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 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제안
  - 2.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어촌정 책심의회의 제안
  - 3. 지역 여론조사 민원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한 자체적 개발
  - 4.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협의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의 제안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 경우에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이조화롭게 발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사업을 운영· 수행할 민간 운영기관을 공모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을 운영·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역량 심의를 요청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와 민간 운영기관의사업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 ⑤ 실시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
  -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
  -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4. 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
- 5. 지방자치단체와 사업비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 액 및 지급시기
- 6. 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 7.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 림어업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위 탁 및 관리계획
- 8.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민간 운영기관이 연장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서가 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 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된 실시계획서 변경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⑧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제출연장·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지정받 은 경우
  - 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 3. 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 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측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측정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에 제8조제5항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

림어업 발전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 제13조(국회 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 문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한 자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